

2024년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 수출 부문 참여기업 모집

급변하는 수출환경 속 소상공인의 안정적 수출 기반 확보와 자생력 제고를 위해 경기/인천 지역의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에게 수출 분야의 전문인력(컨설턴트)을 활용하여 소상공인에 특화된 맞춤형 컨설팅을 시행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사)한국중소벤처무역협회

□ 지원대상: 수출 애로를 겪고 있는 경기/인천 소상공인 또는 예비창업자

- 소상공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름

※ 소상공인: 아래의 기준을 모두(①+②) 만족하는 자

- ①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가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 사업자
- ②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소기업 규모 기준(첨부 1) 이하인 업체

- 예비창업자: 임대차계약서 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자가건물 소유) 소지자

* 사업개시일 이전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포함

□ 지원규모: 145건 내외

□ 지원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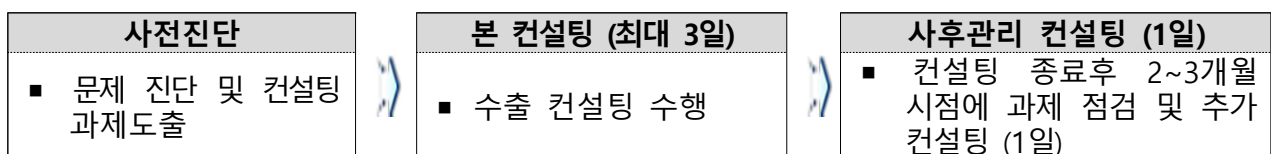
- (분야) 수출지원을 위한 **수출 실무** (해외시장조사, 해외인증, 통관절차 등), **마케팅** (해외 유통채널, 해외바이어 발굴지원 등)의 컨설팅

- (내용) 수출 분야 전문 인력 (컨설턴트)을 활용한 맞춤형 컨설팅 제공 (최대 4회, 회당 30만 원)

* 국비 90%, 자부담 10% (단, 자부담 무료 조건 충족 시 100% 지원)

** 본 컨설팅 수행 후, 사후관리 컨설팅 1회 포함 횟수

< 컨설팅 구성 >



- **(연계혜택)** 24년도 하반기 기업가형(바우처) 연계 지원 (최대 300만 원 이내)

* 바우처 최대 300만 원 이내 (국비 80%, 자부담 20%)

** 컨설팅 수혜기업 중, 기업가형(바우처) 희망업체 선별 지원

- **(지원조건)** 컨설팅 비용의 90% 국비 지원, 10% 자부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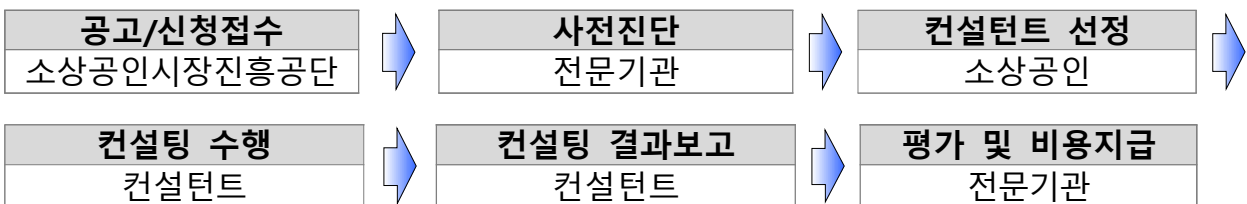
* (예시) 컨설팅 4일 기준 1,200천원(1일 300천원)소요, 자부담금 120천원 발생

- 단, 자부담 무료 조건 해당 시 100% 국비 지원 (자부담 무료)

< 자부담 무료조건(아래 조건 중 1개 이상 해당 시) >

자부담 무료 조건	비고
① 간이과세자	
② 최근 1년 연매출액 8,000만원 미만 소상공인	
③ 백년가게 및 백년소공인	
④ 지역경제위기지역 소상공인	'첨부3' 참조
⑤ "은행 연계 경영컨설팅" 신청 소상공인	자부담비 限
⑥ '23년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수료기업	
⑦ '24년 동네단위 유통채널 구축사업 수혜자	
⑧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 중 혁신 공모사업에서 소상공인 육성과제를 제시하여 선정된 기초지자체(경남 의령군) 소재 소상공인	
⑨ 환경부 지정 '1회용품 줄인가게'	
⑩ 동네 컨설팅 지원 그룹	동네 컨설팅 관련 별도 제출서류 필요 없음

- **(지원절차)**



□ 신청안내

- **(기간)** '24. 3. 25.(월) ~ 별도 마감공지 시까지

- **(방법)** 신청자 본인 명의로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아래의 서류를 작성 및 첨부하여 온라인 소상공인24(sbiz24.kr) 신청.접수

* 소상공인24(www.sbiz.kr) 회원가입 및 로그인 → 공고조회 → 지원신청

- **(제출서류)** 아래 공통서류 제출하며, 자부담 무료 조건 해당 시 추가서류 제출

* 시스템 내, 마이데이터 이용 동의를 사업자등록확인서류, 소상공인확인서류 제출 불필요

□ 제출서류

○ (공통서류)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유효기간 내의 서류)

○ (추가서류) 자부담 무료 조건 해당 경우 아래의 추가서류 제출

자부담 무료조건	제출서류
1.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명원(최근 1개월 이내)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
2. 일반과세자 (면세사업자 포함) 중 최근 1년 연매출액 8,000만원 미만 소상공인	※ 아래서류 중 1부 제출(최근 1개월 이내 발급, 과세기간 최근 1년 이상 명시) ①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②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 위 증명원 상 기재된 과세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자부담 유료
3. 백년가게 및 백년소공인	백년가게 또는 백년소공인 지정 인증서(유효기간 내 지정 인증서만 인정)
4. 지역경제위기 지역소상공인	공통서류(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로 확인 가능, 추가 제출 불필요 * 대상지역 및 지정기간에 따라 운영하며, 고용노동부 고시(대상지역 및 지정기간) 등에 따라 일부 변동 가능
5. "은행 연계 경영컨설팅" 신청 소상공인	협약이 체결된 15개 은행 및 예금보험공사에서 발급한 은행추천서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KEB하나은행, 중소기업은행, 국민은행, 한국씨티은행, 수협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예금보험공사
6. '23년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지원 사업 수혜자	'23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지원사업 수료증 ※ 소상공인 컨설팅 시스템 연계 확인(추가 제출 불필요) * 단, 시스템 연계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별도 수료증 제출 必
7. '24년 동네단위 유통채널 구축사업 수혜자	동네단위 유통채널 구축사업 수혜자 확인서(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발급)
8.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 지역 중 혁신 공모사업에서 선정된 경남 의령군 소재 소상공인	사업자등록증명원(최근 1개월 이내)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
9. 환경부 지정 '1회용품 줄이gage'	- 사업자등록증명원(최근 1개월 이내)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 - 1회용품 줄이gage MAP 캡처 화면(해당업체명 및 주소 확인 가능必)

□ 신청 유의사항

- 신청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신청기한 이후에는 제출이 불가하오니 **반드시 기한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마감일에 사용자 접속 건이 급증하여, 시스템 사용에 일부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급적 여유 있게 신청바랍니다.
- 당해 연도 소상공인 컨설팅 수혜(신청인 기준)는 1회만 가능함
- **신청서류는 모두 필수로 제출**하여야 하며(미첨부시 신청 불가), 신청 이후라 할지라도 서류 중 파일 첨부이 잘못되었거나 서명 및 직인 누락 등 **제출요령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평가에 불이익이 있으니 반드시 확인 후 신청**
- 단순 소모성 경비, PC-테이블 등 집기와 같이 사업 종료 후 처분 가능한 물품, 개인 소유물이 될 수 있는 자산성격의 물품, 기타 아이디어 실현 및 고도화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판단되는 비용은 선정된 경우에도 지원(정부지원금)하지 않고 사용 시 불인정 함
- 특수업종분야(과제)에 대한 컨설팅 요청 시, 해당 컨설턴트 Pool에 전문가가 없을 경우 컨설팅 지원이 불가할 수 있음
- 신청인의 사정(병원입원, 연락두절 등)으로 진행이 어려운 경우, 신청 완료 다음날로부터 30일(공휴일 포함) 경과 시 취소 조치함
- 자부담금 납부안내 SMS를 받은 다음날로부터 7일 이내(공휴일 포함) 미입금 시 자동으로 취소 처리함
- 컨설턴트 선정안내 SMS를 받은 다음날로부터 10일 이내(공휴일 포함)에 신청인이 컨설턴트 선정을 하지 않을 경우 취소 처리함
- 정부 재정의 형평성 있는 활용을 위해 타 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유사사업과의 중복 신청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업신청이 취소 또는 환수조치 될 수 있음
- 당해 연도 기업가형 육성 컨설팅 공급기관에 선정된 경우 컨설팅 지원 불가하며 사업신청이 취소 또는 환수 조치 실시
- 신청인이 허위서류를 제출하거나 신청서류를 대필하여 제출하는 경우, 평가 시 탈락 처리되며 선정 이후라 할지라도 선정 취소될 수 있음
- 전문기관이 사업성과 점검 및 연계 지원 등을 위한 조사를 실시할 경우, 신청인은 성실히 응하여야 함

□ 문의처

구분	기관	연락처
1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2	한국중소벤처무역협회	02-2138-7997

- 첨부
1.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
 2. 소상공인 정책자금 용자제외 대상 업종
 3. '24년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컨설팅) 자부담 무료조건(지역경제 위기지역)
 4. 신청서류별 제출요령
 5. '24년 적용기준 중위소득 125% 및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판정기준표

<첨부 1>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17.10.17.)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식료품 제조업	C10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
2. 음료 제조업	C11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9. 1차 금속 제조업	C24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5. 가구 제조업	C32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17. 수도업	E36	
18. 농업,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
19. 광업	B	
20. 담배 제조업	C12	
2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2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7.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8.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29. 건설업	F	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
30. 운수 및 창고업	H	
31. 금융 및 보험업	K	
32. 도매 및 소매업	G	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
33. 정보통신업	J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한다)	E (E36 제외)	평균매출액등 10억원 이하
35. 부동산업	L	
36.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N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평균매출액등 10억원 이하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41. 교육 서비스업	P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43.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 산업분류의 대분류(제조업은 중분류) 기준에 따른다.
- 위 표 제27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 (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로 한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표준산업분류	업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107 중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16, 46417 중	모피제품 도매업 *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약국, 한약국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56211	일반유희주점업
56212	무도유희주점업
58122 중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58211, 58212, 58219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 부동산의 임대, 구매,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분양, 임대 활동이 포함 * 단, 부동산관리업(6821),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68221)은 신청가능 -부동산관리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주거용·비주거용 부동산관리)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표준산업분류	업종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731	수의업
73904 중	감정평가업
75330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예: 탐정업, 흥신소 등)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 안마원(96122)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 가능(통계청 기준)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21 중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 가능 -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 임대차계약서 또는 등기부등본 징구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기업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가능/불가능업종 관련 해석 및 예시

* 도소매업 중 전자담배 도매업, 성인용품소매 지원불가

☞ 산업파급효과가 적고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보증제외업종으로 정책자금 지원이 적절치 않음

* 기타 : 골프연습장(91136), 스크린골프연습장(91136)은 지원가능

지역경제 위기지역

(2024. 3. 25. 기준)

구분	지역	지정기간
고용위기지역	경상남도 거제시	'24. 1. 1.~ '24. 6. 30

신청서류별 제출요령

(공통서류) 소상공인 필수제출 - (마이데이터 동의 시 제출 불필요)

제출서류	발급처
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www.nps.or.kr) 또는 ☎1577-1000 연락 후 팩스 발급 요청
건강보험(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내역)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월별 보험료 부과내역조회(고용, 산재)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또는 ☎1588-0075(고객지원센터) 문의
소상공인확인서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mss.go.kr) - 발급방법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로그인 →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신청 → 온라인자료제출하기 → 제출자료 조회하기 → 신청서 작성하기 → 신청서 제출 → 확인서 출력
사업자등록증(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최근 1개월 이내)	세무서,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개인별 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 마이데이터 수신불가

(공통서류) 예비창업자 필수제출

제출서류	발급처
본인 명의 임대차계약서	보유 중인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자가 건물인 경우)	등기소,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추가서류) 자부담 무료조건 해당 시 서류 제출

구분	제출서류	발급처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제출한 공통서류를 통해 확인 (추가 제출 불필요)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백년가게 및 백년소공인	백년가게 또는 백년소공인 인증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지역경제위기·특별 재난지역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제출한 공통서류를 통해 확인 (추가 제출 불필요)
“은행 연계 경영컨설팅”	협약이 체결된 15개 은행에서 발급한 은행추천서	추천 은행에서 발급 후 제출
’23년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수혜기업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수혜기업 수료증	소상공인 컨설팅 시스템 연계 확인 가능시, 추가 제출 불필요 *단, 시스템 연계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별도 수료증 제출 必
’24년 동네단위 유통채널 구축사업 수혜자	동네단위 유통채널 구축사업 수혜자 확인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성장지원실 발급 042-363-7745,7749
의령군 소재 소상공인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제출한 공통서류를 통해 확인 (추가 제출 불필요)
환경부 지정 ‘1회용품 줄인가게’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제출한 공통서류를 통해 확인 (추가 제출 불필요)
	1회용품 줄여가게 MAP 캡처 화면(해당업체명 및 주소 확인 가능必)	1회용품 줄여가게 MAP 캡처 화면 (해당업체명 및 주소 확인 가능必)

2024년 적용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및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판정기준표

(단위: 원)

가구원수	기준 중위소득(125%)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2,785,556	98,748	947	33,426,675
2인	4,603,261	163,186	1,566	55,239,135
3인	5,893,321	208,918	2,005	70,719,855
4인	7,162,391	253,907	2,436	85,948,695
5인	8,369,669	296,705	2,847	100,436,025
6인	9,522,961	337,589	3,240	114,275,535
7인	10,643,743	377,321	3,621	127,724,910
8인	11,764,524	417,052	4,002	141,174,285
9인	12,885,305	456,784	4,384	154,623,660
10인	14,006,086	496,516	4,765	168,073,035

※위 보험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부담금임

※판단방법

가) 3인 가구, 직장가입자 1인인 경우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월 208,918원 이하인 경우 - 소득요건 충족

나) 3인 가구, 지역가입자 1인인 경우

보험료 고지서상 소득점수가 2,005점 이하 또는 지역보험료 부과내역확인서상의 연간소득 70,719,855원(5,589,321원×12월) 이하인 경우 - 소득요건 충족

다) 가구원 2인 이상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경우

모두 직장가입자일 때,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계액이 가구원수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 이하인 경우 소득요건 충족

모두 지역가입자일 때, 연간소득 합계액이 가구원수에 해당하는 연간소득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요건 충족

라) 건강보험 직장·지역가입자가 혼합된 경우

해당가구 소득자들의 연간소득 합계액 또는 월 소득의 합계액이 가구원 수에 따른 연간소득 또는 월 소득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요건 충족